

1. 개정이유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관세청이 운영·관리하는 전자시스템으로 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내용 등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11.26. 공포, 2020.5.27./2020.11.27. 시행) 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자시스템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있었으나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심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등(안 제8조의2, 별표7 및 별표8 신설)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마련

나. 문화재 국외 반출 신청 및 허가 절차(안 제20조 및 제43조)

- 1)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허가 관련 조항, 서식 정비

- 2) 일반동산문화재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자시스템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

- 3) 일반동산문화재 국외 반출 및 반출기간 연장 허가 심사기준 규정
- 다. 문화재매매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52조의3 신설)

문화재매매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

라.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증명서류 등(안 제53조)

- 1)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수한 사람: 해당 성적증명서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사람: 해당 성적 증명서 또는 학점증명서
- 3) 해당 문화재관련 전공학점은 18학점 이상으로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생략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5항”을 “제1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조제4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성 등에 관한 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은 별표7과 같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경우 별지 제92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의6제5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표시방법은 별표8과 같다.

⑤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거나 법 제22조의7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법 제39조제5항”을 “법 제39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외 반출 허가서는 별지 제28의2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서는 별지 제29의2호서식에 따른다.

⑦ 제6항에 따른 수출 허가서는 별지 제30의2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제5항 중 “제2항 및”을 “제3항 및”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별지 제28호서식”을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9호서식”을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별지 제76호서식”을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문화재의 전시 필요성 및 예상되는 전시효과
2. 해당 문화재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3. 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의 적정성 여부
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법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5. 포장, 이송 시의 안전성 여부
6. 반출 허가 도는 반출 기간 연장 허가 신청자의 문화재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7. 그 밖에 보험가입 등 반출 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구비 여부

④ 제1항에 따른 국외 반출 허가서는 별지 제28의2호 서식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서는 별지 제29의2호 서식에 따른다.

⑧ 제6항에 따른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서는 별지 제76의2호 서식에 따른다.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문화재매매업의 승계신고) 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지위 승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승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승계신고서를 수리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 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승계신고인에게 다시 교부해야 한다.

제53조의 제목“(자격 요건 증명서류)”를“(자격 요건 증명서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성적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법 제76조제1항제3호”를 “법 제76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인증서

② 법 제7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해당 문화재관련 전공학점은 18학점 이상으로 한다.

별표 5 나목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근거 법조문 “법 제80조제1항제4호”를 “법 제80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은 법인이 해당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3개월 이내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 제80조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5. 법 제77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5호	허가 취소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8호의2서식과 별지 제29호의2서식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제40조제1항제7호·제40조제2항·제55조제7호”를 “제40조제1항제7호·제40조제3항·제55조제7호”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7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의2서식, 별지 제85호의3서식, 별지 제91호서식 및 별지 제9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4항·제5항, 제20조제7항·제8항, 제43조, 별지 제28호서식에서부터 별지 제30호서식까지,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76호서식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②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가지정문화재(假指定文化財)”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농어촌민박사업 기호(○)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⑥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3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7] <신설 2020. 5. 27.>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기준(제8조의2제2항 관련)

영역	항목	주요 내용
1. 교육내용 및 교육과목	가. 프로그램 목표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문화재교육’의 정의에 부합할 것 2)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
	나. 프로그램 내용	1) 프로그램 대상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해당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내용일 것 2) 학습자(교육 대상자)의 요구 및 특성을 반영한 내용일 것 3) 프로그램의 개요, 일정, 기대효과, 유의사항 등 관련 내용이 충실히 갖춰져 있을 것
	다. 프로그램 구성	1)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지식교육, 체험교육 등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을 것 2) 구체적인 학습지원 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라. 운영자원 관리	1)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을 것 2) 프로그램의 홍보, 참여 유도 등 참여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자체 평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2. 교육시설	가. 시설환경	1)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어 것 2) 강의실, 야외시설, 답사지 등 프로그램 내용에 적합한 교육장소를 확보할 것
	나. 안전관리	1)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교육장소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비고

1. 인증을 신청한 프로그램이 영역별로 분류된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 프로그램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2. 인증 기준의 영역별 각 항목의 세부 필요사항 및 증빙서류 등 인증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3. 문화재청장은 인증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표시 등(제8조의2제4항 관련)

1. 인증표시



인증번호 제 호
문화재청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표시방법

- 가.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표시는 도넛형의 원형으로 하고, 중앙에는 정부 상징표시(symbol mark)를 사용하며, 정부 상징 표시의 윗부분에는 인증명칭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적고, 아랫부분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소를 적는다.
- 나. 인증표시 아래에는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인증번호와 인증의 유효기간을 표시한다.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짜와 인증이 만료되는 날짜를 위의 인증표시 예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다. 인증표시의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번호와 유효기간은 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 청 인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문 화 재 명 칭	종 류	지정(등록) 번호	제 호 수량
규 격	보관 장소		
반 출 목 적			
반 출 대 상 국 가	보 험 방 법		
반출예정연월일	반입예정연월일		
반 출 담 당 자	성 명		
	주 소		
반출중보호방법			
반출에관한협약			
내 용			
그 밖 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3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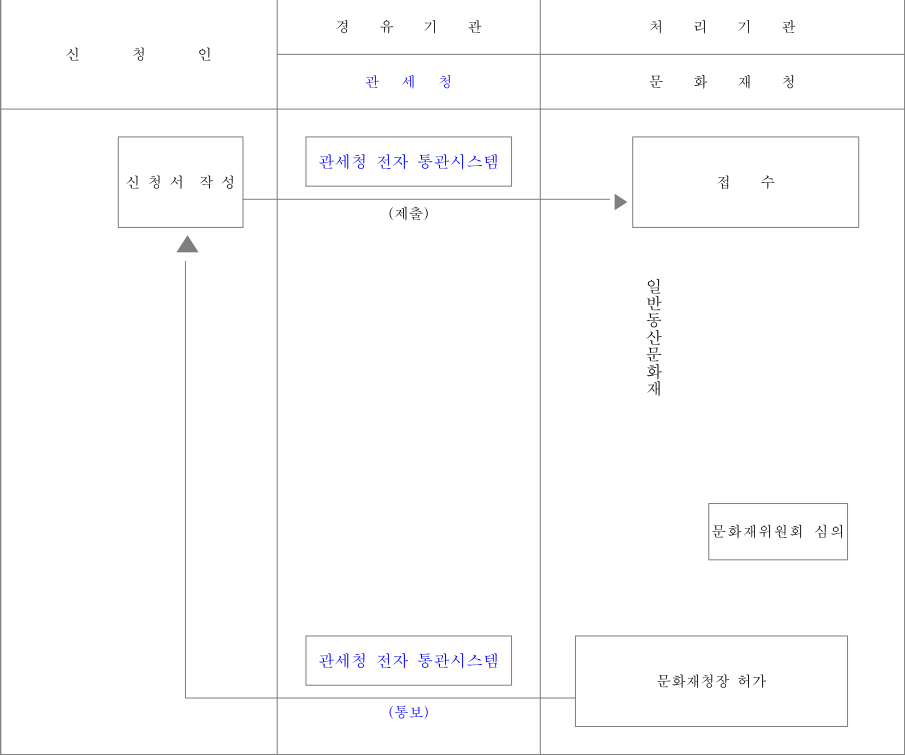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사진 포함) 1부 4.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 포함)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

지정(등록)번호		문화재의 사진
명칭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지정(등록)번호		문화재의 사진
명칭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지정(등록)번호		문화재의 사진
명칭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지정(등록)번호		문화재의 사진
명칭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 (주의사항) 사진 용량이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의 첨부 가능 용량(30MB)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신청서를 HWP파일에서 PDF파일로 전환 저장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 [파일] - [PDF로 저장하기])

국외 반출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문 화 재 명 칭		종류	지정(등록) 번호	제 호	수량
허 가 번 호 및 연 월 일					
당초의 반출·입 예정 연월일					
연장허가 신청 반출·입 연월일					
연 장 사 유					
기간 연장에 관한 협 약 내 용					
그 밖 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3항,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 반출 문화재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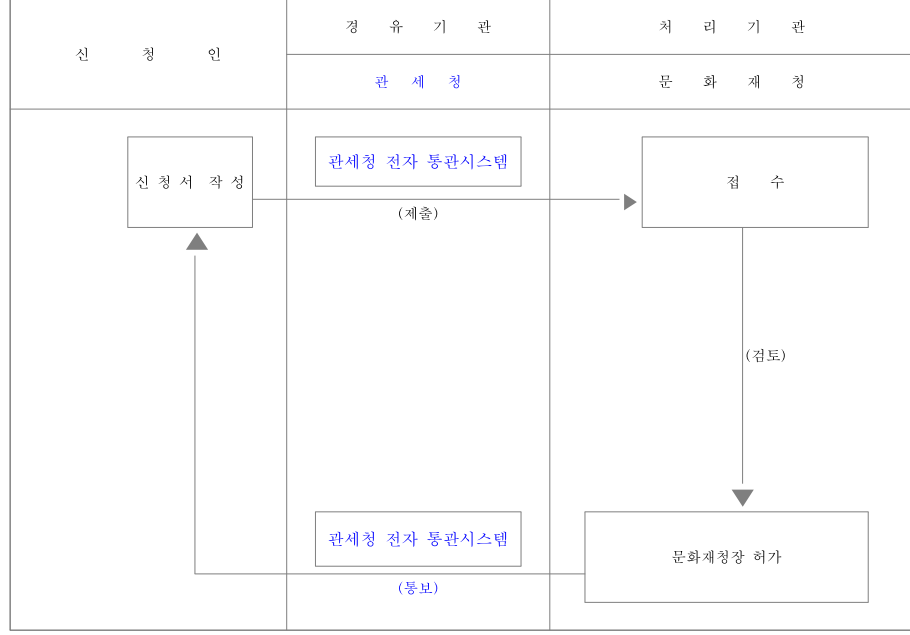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험증서 사본 1부	수수료
	2. 소유자 동의서 1부	
	3. 허가신청 목록(사진 포함) 1부	없음
	4.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 포함)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 목록

지 정(등 록)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 정(등 록)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 정(등 록)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 정(등 록)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 (주의사항) 사진 용량이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의 첨부 가능 용량(30MB)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신청서를 HWP파일에서 PDF파일로 전환 저장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 [파일] - [PDF로 저장하기])

당초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 목록

지 정(등 록)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 정(등 록)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 정(등 록)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지 정(등 록)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 (주의사항) 사진 용량이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의 첨부 가능 용량(30MB)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신청서를 HWP파일에서 PDF파일로 전환 저장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 [파일] - [PDF로 저장하기])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서

허가
받는 자

성 명
(기관명)

주 소

대상
문화재

종 류

지정(등록)
번호

제 호

명 칭

규 격

수 량

허가
사항

개 요

반출국
(장 소)

반출기간
(전시기간)

전시명

허가
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1항,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제4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 인

허가번호: 호

(앞쪽)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행 정 사 항

- 관세청 수출 신고 시 기입하여야 하는 [요건승인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3항,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신청서의 [허가번호 및 연월일]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국외 반출된 문화재가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문화재청에 알려야 하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관리 상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국외 반출된 문화재를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재는 몰수합니다.
- 국외 반출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반입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 목록

지정(등록) 번호		문화재의 사진
명칭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문화재의 사진
지정(등록) 번호		
명칭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문화재의 사진
비고		
지정(등록) 번호		
명칭		
수량		
규격		
소유자		문화재의 사진
보관장소		
비고		
지정(등록) 번호		
명칭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문화재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명 (기관명)		
	주소		
대상 문화재	종류	지정(등록) 번호	제 호
	규격		명칭
허가 사항	개요		
	반출국 (장소)		
	당초 반출기간 (전시기간)	변경 반출기간 (전시기간)	
	전시명		
허가 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3항,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행 정 사 항

1. 국외 반출된 문화재가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문화재청에 알려야 하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국외 반출된 문화재를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재는 몰수합니다.
4. 국외 반출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반입신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문화재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 목록

지정(등록)번호		문화재의 사진
명칭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문화재의 사진
지정(등록)번호		
명칭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문화재의 사진
비고		
지정(등록)번호		
명칭		
수량		
규격		
소유자		문화재의 사진
보관장소		
비고		
지정(등록)번호		
명칭		
수량		
규격		문화재의 사진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상 문 화 재	명 칭	종 류	
	지정번호	수 량	
수 출 목 적			
수 출 대 상 국 가		대 상 기 관	
수 출 예 정 연 월 일		수 송 방 법	
수 출 담 당 자	성 명		
	주 소		
수 출 중 보 호 방 법			
수출에 관한 협약 내용			
그 밖 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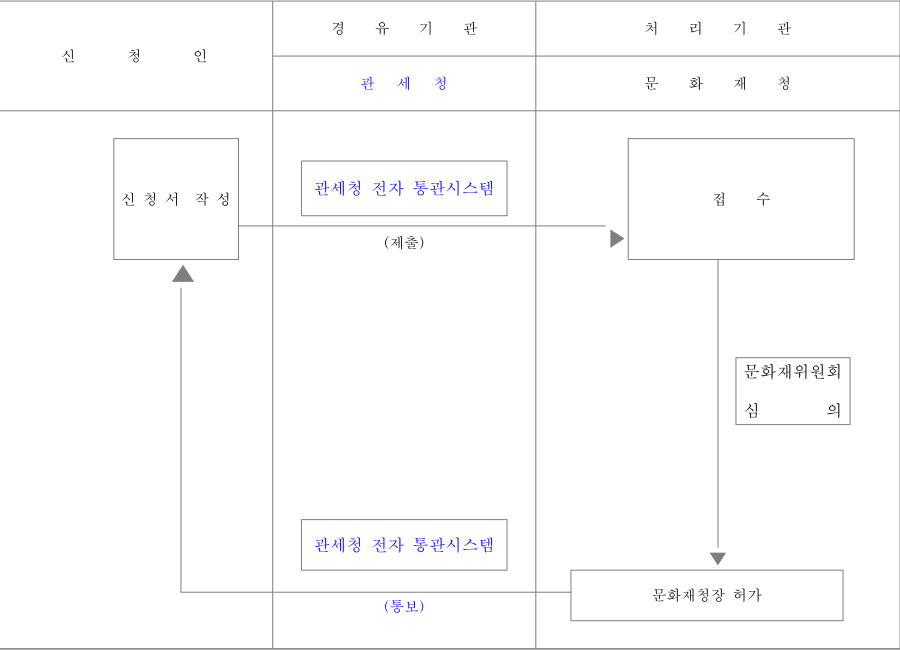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연구 및 전시) 계획서 1부. 2. 현상변경(표본·박제) 허가서 또는 인공증식 증명서 사본 1부. 3. 허가신청 목록(사진 포함) 1부. 4.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연기념물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앞쪽)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 목록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 (주의사항) 사진 용량이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의 첨부 가능 용량(30MB)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신청서를 HWP파일에서 PDF파일로 전환 저장하여 첨부해주시요. (방법 : [파일] - [PDF로 저장하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 서식] <신설 2020. 11. 27.>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재	종 류	지정번호	제 호 명 칭
	수 량		
허가 사항	개 요		
	수출국 (장 소)		
허가 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 인			

210mm×297mm[백상지(80g/㎡)]

행 정 사 항

1. 관세청 수출 신고 시 기입하여야 하는 [요건승인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 목록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지 정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보 관 장 소		

문화재 국내 반입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성 명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문 화 재 명 칭		종류	지 정 (등 록) 번 호	제 호	수량		
반 출 허 가 내 용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허가조건						
반 출 · 반 입 연 월 일	반 출		반 입				
반 출 입 담 당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보 관 장 소	반 출 전						
	반 입 후						
문 화 재 현 황							
그 밖 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40조1항제8호·제55조제8호·제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제38조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의 국내 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국내 반입 신고 목록(사진 포함) 1부 2. 수입신고 필증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문화재 반입 신고 목록

지정(등록)번호	+	문화재의 사진
명칭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지정(등록)번호		문화재의 사진
명칭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지정(등록)번호		문화재의 사진
명칭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지정(등록)번호		문화재의 사진
명칭		
수량		
규격		
소유자		
보관장소		
비고		

※ (주의사항) 사진 용량이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의 첨부 가능 용량(30MB)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신청서를 HWP파일에서 PDF파일로 전환 저장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 [파일] - [PDF로 저장하기])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단체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문화재명칭					
종류		수량	취득경위		
규격		반출전 소유자	반출방법 ☐ 구입 ☐ 기증		
목적					
반출국가					
보험방법					
반출예정연월일					
반출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반출중보호방법					

「문화재보호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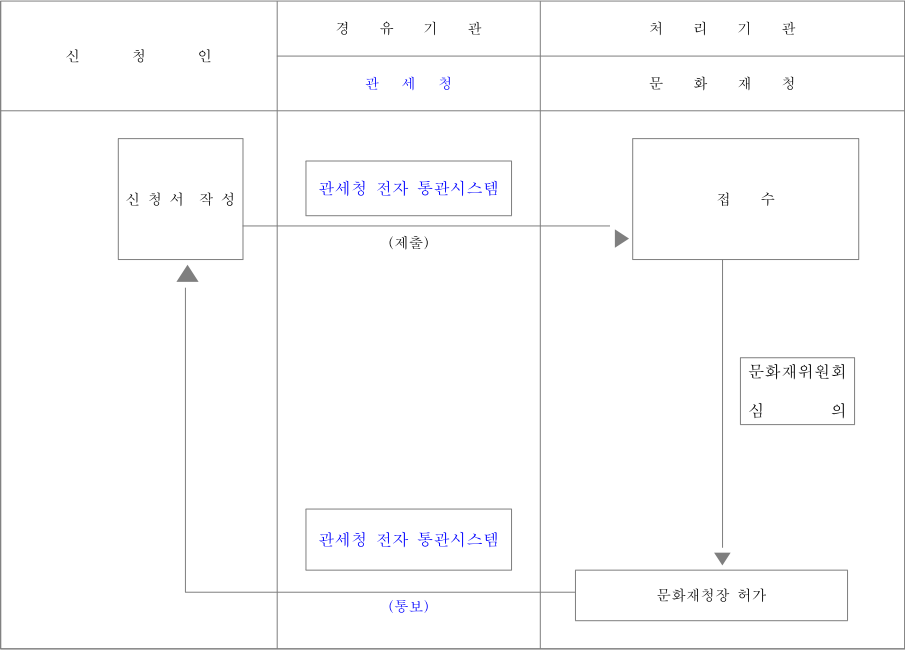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취득 경위서 1부 2. 문화재 반출국가 인증서 1부 3. 법인 인증서 1부 4. 허가신청 목록(사진 포함) 1부 5. 보험증서 사본 1부 6.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 포함) 1부 7. CITES(멸종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 허가서(해당할 경우)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

관 리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관 리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관 리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관 리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 (주의사항) 사진 용량이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의 첨부 가능 용량(30MB)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신청서를 HWP파일에서 PDF파일로 전환 저장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 [파일] - [PDF로 저장하기])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재	종 류	수 량
	규 격	반출 방법 ☐ 구입 ☐ 기증
허가 사항	개 요	
	반출국 (장 소)	
	반 출 연월일	
	전시명	
허가 조건		
「문화재보호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제 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행 정 사 항

1. 관세청 수출 신고 시 기입하여야 하는 [요건승인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2. 국외 반출된 문화재가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문화재청에 알려야 하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 목록

관 리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관 리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관 리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관 리 번 호		문화재의 사진
명 칭		
수 량		
규 격		
소 유 자		
보 관 장 소		
비 고		

※ (주의사항) 사진 용량이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의 첨부 가능 용량(30MB)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신청서를 HWP파일에서 PDF파일로 전환 저장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 [파일] - [PDF로 저장하기])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등록) 번호				
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그 밖의 사유()			
분실사유				

「문화재보호법」 제7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신고인: (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문화재매매업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유의 사항

- 매매업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본질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매매업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75조, 제75조의2, 제78조, 제80조부터 제80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문화재보호법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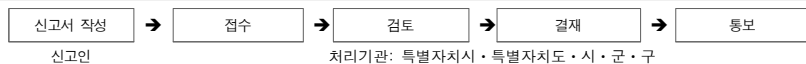
- 가.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 가. 양도·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상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 가.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5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양수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처리 절차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1호서식] <신설 2020. 5. 27.>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개인명)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명칭			
	프로그램 목표			
	참여대상			
	주요내용			
	프로그램 구성 (시간/비율)	계	지식교육	체험교육
	시행기간			
	시행장소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서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에 관한 자료 일체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문화재청)	→	검토 처리기관 (문화재청)
		→	결재 처리기관 (문화재청)	→
			인증서 발급 처리기관 (문화재청)	

210mm×297mm[백상지(80g/㎡)]

제 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서

1. 프로그램 명칭:
2. 시행기관 명칭: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4. 주 소:
5. 유효기간: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20 . . ~ 20 . .)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직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 제13조제6항-----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위기준의 고시일부터 10년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지형의 변화 등 해당지역의 여건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 법 제13조제5항-----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8조의2(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6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인 증신청서에 문화재교육 프로그 램의 내용 및 구성 등에 관한 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문화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기준 은 별표7과 같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프 로그램을 인증하는 경우 별지 제92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 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④ 법 제22조의6제5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표시방법은 별표8 과 같다.

⑤ 문화재청장은 법 제22조의6 제3항에 따라 문화재교육 프로 그램을 인증하거나 법 제22조의 7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④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천연 기념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에 별지 제30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 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 재, 문화재자료의 반출 허가과 반출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

공고하여 일반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문화재교육 프 로그램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이 따로 정 한다.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국외 반출 허 가서는 별지 제28의2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국외 반출 기 간의 연장 허가서는 별지 제29 의2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39조제6항-----

-----.

⑦ 제6항에 따른 수출 허가서는 별지 제30의2호서식에 따른다.

⑧ -----

----- 제1

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 ④ (생략) ⑤ 법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제2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다. ⑥ ~ ⑨ (생략)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3항 및 ----- ----- ----- -----.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4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별지 제2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반출 기간 연장	제4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① ----- ----- ----- ----- -----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 ---. ② ----- ----- -----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문화재의 전시 필요성 및 예상되는 전시효과 2. 해당 문화재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3. 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의 적정성 여부 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법 등 적절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5. 포장, 이송 시의 안전성 여부 6. 반출 허가 도는 반출 기간 연장 허가 신청자의 문화재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7. 그 밖에 보험가입 등 반출 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구비 여부 ④ 제1항에 따른 국외 반출 허가서는 별지 제28의2호 서식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④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76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서는 별지 제29의2호 서식에 따른다.

⑥ -----

-----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6호서식-----
-----.

⑦ ----- 제6항-----

-----.

⑧ 제6항에 따른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서는 별지 제76의2호 서식에 따른다.

제52조의3(문화재매매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지위 승계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

제53조(자격 요건 증명서류)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1. (생 략)
2. 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신 설>

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승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승계 신고서를 수리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 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승계신고인에게 다시 교부해야 한다.

제53조(자격 요건 증명서류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성적증명서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

3. <u>법 제76조제1항제3호</u>에 해당 하는 사람: 해당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과 해당 경력증명 서 또는 재직증명서 <u><신 설></u>	<u>하는 사람: 해당 성적증명서</u> <u>또는 학점인증서</u> 4. <u>법 제76조제1항제4호</u>----- ----- ----- ----- ② <u>법 제76조제1항제2호·제3</u> <u>호에 따른 해당 문화재관련 진</u> <u>공학점은 18학점이상으로 한다.</u>
---	---